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○○군 ○○면 ○○ 전 2,575.2182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가"부분 2,244.6382㎡에 대한 피고 의 지분 779분의 100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1. 토지의 매입

원고는 1961. 5. 25.(단기 4294년 음력 3. 24.) 소외 ●●로부터 경기 ○○군 ○○면 ○○ 전 2,575.2182㎡(다음부터 "이 사건 토지"라고 함) 중 별지도면 표시 1. 2. 3. 4.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가"부분 2.244.6382㎡를 특정하

여 금 210,000환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소외 ◉◉◉에게 지급하였습니다.

### 2. 구분소유관계설정

이 사건 토지 중 330.58㎡는 상환농지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, 원고가 매입한 2,244.6382㎡는 매입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목과 달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, 두 토지 사이는 과거부터 논둑으로 그 경계를 뚜렷이 표시해 왔습니다.

ww.klac.or

#### 3. 공유등기

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"가"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에도 1964. 5. 8. 공유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매입한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.

#### 4. 명의신탁해지

원고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, 이는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등기와 그 특정부분 외의 부분에 관한 원고의 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

#### 5. 결 론

그러므로,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, 이 사건 토지중 특정매수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가"부분 2,244.6382㎡에 대한 피고의 잔존지분 779분의 100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부동산매매계약서

1. 갑 제2호증

상환대장

1. 갑 제3호증

증인인증서

1. 갑 제4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5호증

토지대장

1. 갑 제6호증

지적도등본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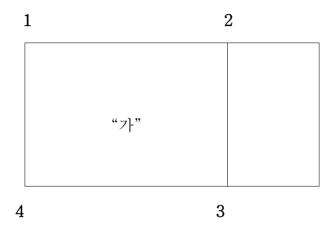
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**도** 면 (경기 ○○군 ○○면 ○○ 전 2,575.2182 m²)



---- <del>22</del> ----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
비 용 불 복 절 차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3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·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
<b>기</b> 타	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,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판한 혐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음(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다30348, 94다3 관결). ·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·사용하여 온 경우,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, 그 중 1인이 특정하여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임(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56139 판결). ·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므로(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(나)목 참조), 이 경우에는 위 법률 제11조가정하는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는 판결에 의하지아니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(2000. 7. 19. 등기 3402-506 절의회답). ·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,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결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죽하고, 그 매수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인은 그 특정매수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"분할하여"라는 문인은 그 특정매수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"분할하여"라는 문인은 누락시켰다 하여도 이는 판결경정 사유라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84. 8. 17.자 84고44 결정).

# 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

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<sup>8</sup>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<sup>\*</sup>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 ※ (2) 소멸시효

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,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(대법원 1991.11.26. 선고 91다34387 판결).

#### ※ (3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